

「투자권유준칙」 개정사항

소관부서	경영기획본부(마케팅)	비 고
개 정 일	2023. 05. 19	
시 행 일	2023. 05. 1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생략>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생략>- 금소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별지 제3호]에 따라 알려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이하동일>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하동일>- 금소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별지 제3호]에 따라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 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이하동일></p>	<p><개정></p>
<p>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생략>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신설></p>	<p>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이하동일>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p>	<p><신설></p>

<p><신설> 4.~10.<생략> ②~④ <생략></p>	<p>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10.<이하동일> ②~④ <이하동일></p>	
<p>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생략>-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⑨ <생략></p>	<p>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이하동일>-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삭제>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⑨ <이하동일></p>	<p><삭제></p>
<p>제17의2조(청약의 철회) ①~④<생략> <신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p>	<p>제17의2조(청약의 철회) ①~④<이하동일> ⑤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 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이하동일> ⑦ <이하동일></p>	<p><신설></p>
<p>제23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생략>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3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이하동일>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개정></p>
<p>[별지 제6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생략>-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생략>- 합니다.</p>	<p>[별지 제6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이하동일>- 투자자의 서명등의 -<이하동일>- 합니다.</p>	<p><개정></p>